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박해철 · 민병덕 · 김성회

허성무 • 이수진 • 조계원

양부남 • 문대림 • 정진욱

노종면 • 백승아 • 민형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.

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 렵게 하고 있어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,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8조의 제목 중 "계산의 특례"를 "계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과 제3항의"를 "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의"로 한다.

①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,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 ·주·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.

제114조제1호 중 "제67조제1항"을 "제58조제1항, 제67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근로자,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·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·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연장・야간 및 휴일 근로)	제56조(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
	까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
	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
	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8조(근로시간 <u>계산의 특례</u>)	제58조(근로시간 <u>계산</u>) <u>① 사용자</u>
<u><신 설></u>	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,
	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ㆍ
	주・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
	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
	고하여야 한다.
<u>①</u> ~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2} \sim \underline{4}$ (현행 제 1 항부터 제 3
	항까지와 같음)
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	<u>⑤</u>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의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
한다.	
제1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14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제6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	1
조, 제21조, 제22조제2항, 제4	
7조, 제53조제4항 단서, <u>제67</u>	

<u>조제1항</u> • 제3항, 제70조제3	제58조제1항, 제67조제1항
항, 제73조, 제74조제6항, 제7	
7조, 제94조, 제95조, 제100조	
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